



의안번호	제133호
------	-------

<p>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8. 11. 19.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133호
----------	-------

제출연월일 : 2018. 11. 19.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명시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설정 (안 제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 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1) 논산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 대상 아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아님

(5)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가) 예고기간 : 2018. 10. 24. ~ 2018. 11. 13.(20일간)

(나) 결과 : 의견없음.

(6)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7) 충청남도소관실과 : 건설정책과 (☎041-635-2813)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논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논산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⑥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⑦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⑧ 논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⑨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

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⑩ 논산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도 시 재 생 과	홍 재 창
	도 시 개 발 팀 장	하 봉 수
	담 당 자	장 정 현 (746-622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조의2(존속기한) 대지보상특별회</u> <u>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u> <u>일까지로 한다.</u>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해당없음

2. 비용추계결과

해당없음

3. 작성자

해당없음

도시재생과장 홍재창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제2항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